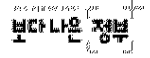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 [주식회사광명당제약-광명당지롱]

1. 우리 청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 '주식회사광명당제약'에서 제조·판매한 '광명당지롱' 제품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 등급	회수 사유
주식회사 광명당제약	광명당지롱	K1882181022 (2021-10-21)	2등급	품질(비소) 부적합

2. 또한,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 회수명령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박소영	051-602-6190	051-602-6247
회수사유	품질(비소) 부적합			회수등급 2등급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주식회사광명당 제약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09(달동)		
전화번호	052-272-2777	FAX번호	052-265-4827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광명당지롱	분류	한약재
주성분	구인(지롱)		
효능·효과	제제 또는 조제용		
포장단위	자사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사용기한)
		K1882181022	2018-10-22(2021-10-2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수대상 한약재를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게시는 의약품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한약재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반포하고 별지제64호 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	------------	-------------	-------------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 1. 2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생략